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송갑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284

발의연월일: 2020. 8. 26.

발 의 자: 송갑석·서삼석·전용기

이동주・안민석・인재근

이형석 · 윤영덕 · 김경만

문진석 · 조오섭 · 이장섭

의원(12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시대 세계 각국은 침체된 제조업을 부흥시키고 제조 과정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정을 혁신하는 스마트공장 중심의 제조혁신 전략을 시행 중임.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은 수출의 80%, GDP의 30%를 담당하고 있으며 그간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온 근간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제조업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인 만큼 제조업의 혁신은 필수적이나, 디지털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 99%를 차지하고 있어 스마트제조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리나라도 그간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개별 공장 단위로 방대한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있으나, 국가 단위의 빅데이터로 수집, 분석하여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향상에 활용하기 위한 인프라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수요는 높은 반면 제조데이터의

생산·수집, 가공·분석, 공유·유통 등 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거나이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규정하는 법규가 없어, 기업이 민간차원에서스스로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높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도 어려움.

이에 따라, 동 법안은 제조데이터에 기반한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 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정부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제조혁신 사업을 수행하는 추진기관을 지정하는 등 정책추진 체계를 구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술경쟁력을 제고하며, 스마트공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라.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

- 고, 제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을 지원하며,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함(안 제11조부 터 제14조까지).
- 마. 가치사슬상 기업이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로 연계 협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성함(안 제15조).
- 바. 스마트공장의 공급기업 육성을 위하여 창업, 연구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을 지원함(안 제16조).
- 사. 표준 보급·확산, 보안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국제협력, 금융지원, 조세에 대한 특례, 협회 설립 등 스마트제조혁신 기반을 조성함(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
- 아. 임직원 등의 파견요청, 전문기관에 대한 보고와 검사,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을 위한 청문,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자료요청, 권한의 위임·위탁 등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다.
- 2. "스마트제조혁신"이란 기업의 제조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 기술, 인공지능 등을 융합하여 제품개발,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 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말한다.
- 3. "제조데이터"란 제품의 기획, 설계, 제조 등 제조과정부터 제품의 유통, 마케팅, 유지·관리 등 활용과정까지 기업이 생산, 보유, 활 용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 4. "스마트공장"이란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해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을 말한다.
- 5. "제조데이터 플랫폼"이란 제조데이터의 생산·수집, 가공·분석,

- 공유·유통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 6. "디지털 클러스터"란 가치사슬상 기업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위해 업종과 지역의 구분 없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형성한 집합체 를 말한다.
- 7.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이란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 제3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따른다.
 - ②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통하여 처리되는 제조데이터가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영업 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중소기업기술(「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을 말한다)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는 「개인정보 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장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2.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 4.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제6조(추진기관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 2.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 3. 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 4.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지원
- 5.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위탁업무
- 6. 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 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 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및 기반조성

- 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있다.
 - 1.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지원
 - 2.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 3.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 4. 디지털 클러스터의 조성
 - 5. 공급기업의 육성
 - 6.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 7.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 8.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 9.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기술경쟁력 제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스마트제조혁신에 필요한 연구개발
 - 2. 기술개발의 효율화를 위한 실증기반 구축
 - 3. 개발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스마트공장 수준확인)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을 확인할 수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한 대상, 확인기준, 확인방법 등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제조데이터 거래 환경 조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조데이터 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조데이터 거래에 참여하는 제조 중소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 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수 있다.
 - 1. 제조데이터의 생산ㆍ수집
 - 2. 제조데이터의 가공·분석
 - 3. 제조데이터의 공유·유통
 - 4. 제조데이터의 표준·품질관리
 - 5.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 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 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4조(전문기관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

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2. 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 3.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⑤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디지털 클러스터의 조성 및 참여기업의 육성
- 2.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 3. 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 4. 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공급기업 육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공급기업의 창업
 - 2. 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 3. 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 4. 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표준 보급·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보급·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표준의 개발 및 도입
 ・확산

- 2.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의 개발 및 도입 •확산
- 3. 그 밖에 기타 표준의 개발 및 도입·확산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보안 강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 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보안시스템 구축
 - 2. 보안 진단 및 자문
 - 3. 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 4.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보안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 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 1. 전문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사업
 - 2.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지원 사업
 - 3.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사업
 -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0조(국제협력)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 · 연구
 - 2.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이전
 - 3.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수출 또는 해외시장진출 지원
 - 4. 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
 - 5. 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21조(금융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 및 금융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2조(조세에 대한 특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거나 디지털 클러스터에 참여하는 등 스마트제조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 제23조(협회 설립) ①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와 이

- 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스마트제조혁신 촉진과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의 정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칙

-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5조(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추진기관,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및 검사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출입시간·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제26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제4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추진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27조(자료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스마트제조 혁신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